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□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 도입 및 착오거래 구제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파생상품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

□ 거래소의 지급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파생상품거래의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결제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(제70조의2 신설, 제74조 및 제82조의8)

□ 직전가격에 비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불리한 가격(고가매수·저가매도)의 호가를 제한하여 급격한 가격변동 및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

○ 정규거래의 접속거래시간(단일가호가 제외) 중 실시간상한가*를 초과하는 매수호가 및 실시간하한가*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의 접수를 차단 (제70조의2제1항, 제82조의8제2항)

< 실시간 상·하한가 도입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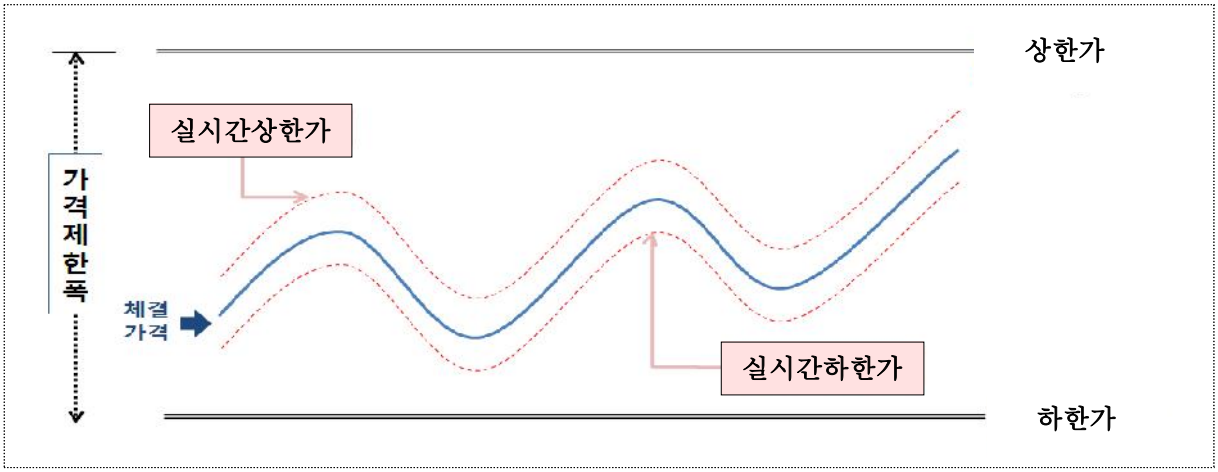

* 실시간상한가 : 직전가격 + 가격변동폭, 실시간하한가 : 직전가격 - 가격변동폭

*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별 1회 큰 폭으로 적용하는 가격제한폭(상한가·하한가)과 구분하여 실시간 변동하는 가격변동폭(실시간상한가·실시간하한가)으로 규정

< 일중 가격제한 제도와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의 비교 >

구 분	일중 가격제한 제도	실시간 가격제한 제도
취 지	· 기준가격(전일 종가) 대비 과도한 가격변동 방지	· 직전가격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가격급변 방지 · 고빈도거래 등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방지
가격제한 범위	당일 기준가격 ± 변동범위	직전 약정가격 ± 변동범위
변동범위	큰 폭 ex) 코스피200선물 : 10%	가격제한폭 범위내 (비교적) 소폭 ex) 코스피200선물 : 1%
적용방식	장중 고정	장중 실시간
적용상품	全 상품	유동성이 풍부한 상품
적용종목	全 종목	최근월물, 차근월물, 제1스프레드종목
설정횟수	1일 중 1회	1일 중 연속(복수) (체결발생시마다)
적용기간	거래시간 전체	접속거래시간

○ 직전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거나 호재·악재 등의 시황급변시에는 거래체결을 제약하지 않도록 실시간 가격변동폭 미적용(제70조의2제2항)

○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상품, 종목, 가격변동폭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사항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함(제70조의2제3항)

□ 접속거래 중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이 실시간 가격변동폭을 벗어나는 경우 실시간상한가(매수) 및 실시간하한가(매도)의 지정가호가로 전환*(제74조제3항)

○ 실시간 가격변동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은 지정가호가만 허용(세칙 사항)

*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에도 잠정 체결가격이 실시간 가격변동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 및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(세칙 사항)

나. 대량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

(1) 거래소의 직권구제 도입 등 일부 제도개선 (제81조의2)

□ 결제곤란 및 시장혼란의 우려가 있는 대량 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해 일정 요건* 충족시 회원의 신청에 의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(제1항)

* 예상손실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것, 거래패턴, 호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할 것 등

○ 착오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원 간 합의방식에서 신청에 의한 직권 구제방식으로 변경

< 착오거래의 가격정정 대상 여부 개념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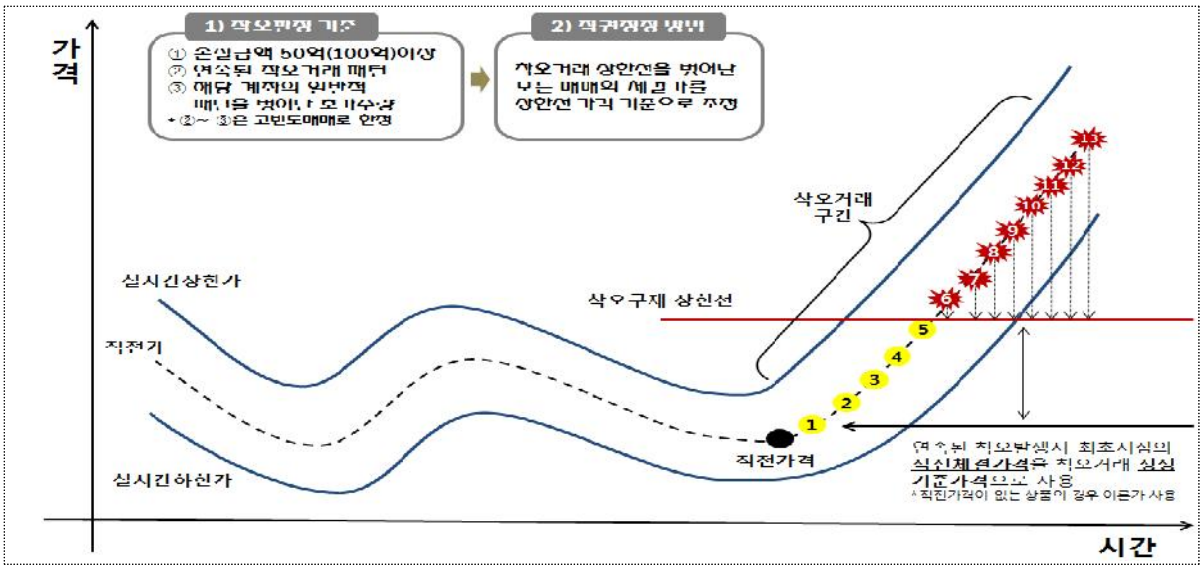

(2) 거래의 취소 제도 도입 (제81조의3 신설)

□ 천재·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복구가 곤란한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제고(제1항)

< 착오거래 정정제도와 (대량)착오거래 구제제도의 비교 >

구 분		내 용	조 문
일반 착오	거래소 착오거래의 정정	·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한 후에 거래소와 회원간 손익 정산 · 구분에 부합하도록 정정	규정 제81조 제1항, 세칙 제77조 제1항, 제78조
	회원 착오거래의 정정	·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 · 구분에 부합하도록 정정	규정 제81조 제2항 세칙 제77조 제2항
대량 착오	투자자 착오거래의 구제	· 일정요건 충족 대량 착오거래의 회원신청에 의한 거래소 직권의 가격 정정	안 제81조의2 제1항
	거래의 취소	· 거래소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복구가 곤란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취소	안 제81조의3

(3) 직권구제에 따른 결제금액 등 조정 (제103조 및 제149조)

□ 착오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직권 구제시 거래소 및 회원은 결제대금 중 착오거래 부분을 조정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함

다.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완결시점 명시 (제104조의2)

□ 결제회원은 업무규정 제104조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거래소에 납부한 때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를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

라. 기타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(제2조 제4호 및 제5호)

□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의 금지금에 대한 부과세 과세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조문정비 (제60조)

□ 기타 조문정비 (제104의3)

3. 참고사항

□ 심사등 : 전략기획부 심사완료(심사연번호 : 제14-77호)
시장감시본부 협의완료(감시제도-457)

□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